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42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	2

I. 개요

1.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42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4. 17.

(3) 회 부 일 : 2026. 4.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상담,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화재안전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으로 하여금 쪽방상담소가 상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 16조제1항제7호).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노숙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취업지원·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쪽방상담소</u> :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취업지원·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7. <u>쪽방종합지원센터</u> ----- -----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쪽방이란,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2016년 노숙인등 실태조사¹⁾ 시에 ‘일정한 보증금 없이 월세 또는 일세를 지불하는 0.5평~2평 내외의 취사·세면·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는 주거공간’으로 정의된 바 있으며, 쪽방주민²⁾은 현행법상 노숙인등³⁾에 해당함.

- 쪽방상담소는 이러한 쪽방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하여 상담·취업지원·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2026년 6월 기준 전국 10개 소가 운영중임.

< 지역별 쪽방상담소 현황 >

시도	시군구	시설명
서울	종로구	돈의동쪽방상담소
	종로구	창신동쪽방상담소
	중구	남대문쪽방상담소
	용산구	서울역쪽방상담소
	영등포	영등포쪽방상담소
부산	동구	동구쪽방상담소
	부산진구	부산진구쪽방상담소
대구	서구	대구쪽방상담소
인천	계양구	인천쪽방상담소
대전	동구	대전쪽방상담소

자료: 보건복지부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욕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노숙인 등의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2024년 5월 실태조사 기준, 쪽방상담소가 등록·관리 중인 쪽방주민 수는 4,717명임(전체 노숙인의 약 37%)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개정안의 취지는 쪽방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담 외에도 생활 등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
- 실제로 쪽방상담소는 단순한 상담 기능에 그치지 않고, 의료지원 연계, 기초생활 지원, 자활·자립 지원, 안전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행 명칭과 실제 수행 기능 사이에 일정한 괴리가 존재하는 측면이 있음.

< 쪽방상담소 주요 지원내용 >

- ▲ 생활상담 : 수급자 지정, 주민등록 복원 등
- ▲ 의료 : 무료검진, 의료서비스 연계
- ▲ 기초생활 : 식품, 생필품 지원(후원연계)
- ▲ 자활·자립 : 취업알선, 신용회복
- ▲ 쪽방촌 안전점검 : 전기·가스·보일러등 점검
- ▲ 정서지원 : 명절 공동차례상 등 문화행사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쪽방거주자는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알코올 의존자 등 복합적 복지 수요를 가진 경우가 많아 단순 상담보다는 여러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시설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쪽방거주자 및 지역사회가 해당 시설을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명칭 변경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쪽방상담소는 상담 이외, 의료지원, 자활·자립지원, 쪽방촌 안전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현재 기능에 부합되도록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필요성에 공감함.
-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쪽방상담소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명칭 현실화를 위한 개정안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497